

#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9. 7. 2) 상정 및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3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 나.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본 조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집행 실적이 있는지?	○ 특별회계 기금은 17억3천만원 정도이며, 2009년도에 3억5천만원을 집행하였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 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32호
의결 년월일	2009. 7. 10. (제153회)

제출년월일 : 2009. 6. 2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3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 나.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를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에 따른”으로 하고, “10년이상”을 “10년  
이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  
법」 제126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퍼센트이내”를 “20퍼센트 이내”로 하며, 제5호 중 “당해 특별회계”를  
“해당 특별회계”로 하고, “기타 수익금”을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4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7조에 의한”을 “제47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  
2호 중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를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 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b></p>	<p><b>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b></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u>같은 법 시행령</u>----- -----<u>제41조에</u>----- <u>따른 10년 이상</u>----- ----- ----- ----- ----- ----- -----.</p>
<p>제2조 (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u></p> <p>② (생략)</p>	<p>제2조(설치 및 관리) ① ----- ----- 「지방자치법」 <u>제126조에 따라</u>-----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u>다음 각호의 재원으로</u> 조성한다.</p> <p>1. (생략)</p> <p>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u>20퍼센트</u>이내</p>	<p>제3조(재원) ----- <u>다음 각 호의</u>-----.</p> <p>1. (현행과 같음)</p> <p>2. ----- ---<u>20퍼센트</u> 이내</p>

현행	개정안
<p>3. (생략)</p> <p>4. (생략)</p> <p>5. <u>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u></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u>해당 특별회계의</u>----- <u>그 밖의 수익금</u></p>
<p>제4조 (용도) <u>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u></p> <p>1. <u>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u></p> <p>2. <u>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u></p> <p>3. <u>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u></p>	<p>제4조(용도)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u>----- -----.</p> <p>1. <u>법 제47조에 따른</u>----- -----</p> <p>2. <u>법 제47조제2항에 따른</u>----- -----</p> <p>3. <u>그 밖에</u>----- -----</p>
<p>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u>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u></p>	<p>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 ----- <u>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u>----- -----.</p>
<p>제6조 (준용) <u>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부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u></p>	<p>제6조(준용) ----- ----- -----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시행령 및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p>
<p>제7조 (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7조(시행규칙) ----- <u>시행에 필요한</u>----- -----.</p>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26조 (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